2023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강서뇌성마비복지관
www.grccp.or.kr

이 책은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복지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 책자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www.grccp.or.kr)** 내

알림마당-복지관 간행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내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전문복지관으로 상담, 치료, 교육, 돌봄, 여가문화, 직업, 자립생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뇌성마비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태아 혹은 영아기를 포함한 만 5세까지 미성숙한 뇌의 손상이나 뇌의 발육 이상으로 발생하는 운동기능의 장애로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장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적장애, 경련, 언어장애, 시각 및 청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며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뇌성마비 증상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에 뇌성마비 장애인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 돌봄, 교육, 일상생활, 보조기기, 자립생활, 고용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보조기기 지원, 복지 지원 서비스가 나아졌으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매년 변화하는 복지정보 속에서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역별, 생애주기별 정보 및 가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발간도 벌써 10회째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E-BOOK과 복지관 홈페이지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편적인 삶을 지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도전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당사자의 주도성을 높여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

박세영

CONTENTS

알려드립니다 12

1. 뇌성마비장애란

01. 뇌성마비의 정의 16
02. 뇌성마비의 원인 17
03. 뇌성마비의 증상 19
04. 뇌성마비의 분류 19
05. 뇌성마비의 치료 23
06.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26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01. 경제적 지원 32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32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3
3. 긴급복지 지원제도 34
4. 장애아동수당 37
5. 장애인연금 38
6. 장애수당 40
7. 부모급여 41
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42
9.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시) 42
10. 청년내일저축계좌 44
11. 희망저축계좌(Ⅰ, Ⅱ) 45
12. 자녀장려금 46
13. 근로장려금 47
1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48
1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50
16.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2
17.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52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02. 의료·재활·건강 지원 53

1.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53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3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54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5
5.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56
6. 건강보험제도 57
7. 의료급여제도 58
8.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59
9. 재난적의료비 지원 60
10.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62
11. 국가건강검진제도 63
12. 장애친화 건강검진 65
13. 건강보험 산정특례 66
14. 건강보험 차상위 67
15.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68
16.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68
17.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69
1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70
1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70
20.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71
2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71

03. 임신·양육·교육 지원 72

1.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72
2.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72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3. 영양플러스	73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73
5.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75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6
7.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76
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7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8
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9
1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80
1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
13. 가정양육수당 지원	81
14. 장애아동 양육수당	82
15.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2
1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83
17. 장애아 보육료 지원	84
18.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84
19.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85
20. 영유아 건강검진	86
2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7
22.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89
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89
24. 가족희망드림 지원	90
25. 아이돌봄서비스	91
26. 육아종합지원센터	93
27. 다함께 돌봄 사업	94
28. 발달재활 서비스	95
29.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96
30. 급식비 지원	97
3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97
32. 언어발달 지원	98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3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98
34.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99
35.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99
3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00
37. 고교학비 지원 101
3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01
39.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102
40. 장애인 정보화교육 102
4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03
42. 평생교육바우처 103
4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05
44.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05
45.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06

04. 일상생활 지원 107

1. 장애인 등록신청 107
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08
3.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08
4. 장애인 활동지원 109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10
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10
7.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111
8. 돌봄SOS센터 사업(서울시) 114
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115
10.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16
1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117
12. 장애인콜택시 119
1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20
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서울시) 121
1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23
16.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24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26
18.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127
19. 서울시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128

05. 주거지원 129

1.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29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0
3. 에너지바우처 131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33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34
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135
7.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35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36
9. 영구임대주택 공급 136
10. 국민임대주택 공급 137
11. 행복주택 공급 137
1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41
13. 긴급 주거지원 144
1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44
15.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47
1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49
1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49
18.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50

06. 취업 지원 151

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1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52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53
4.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54
5.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56
6. 자활근로 156
7.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57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8. 장애인 근로지원인 157
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58
10.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60

07. 보조기기 지원 161

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61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62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63
4.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재원 및 문의처 164
5.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165

08. 법률 지원 167

1. 무료 법률구조 제도 167
2. 무료 법률상담 167
3. 법률홈닥터 168
4. 마을변호사 168
5. 마을세무사 169
6.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69

09. 문화여가 지원 170

1. 통합문화이용권 170
2. 스포츠강좌이용권 171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73
4. 관광정보 안내 174
5. 스포츠활동 176

3. 시설안내

0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80

1. 장애인복지관 180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82
3.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83
4.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86
5. 보조기기센터 187
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88
7. 장애인체육시설 190

3. 시설안내

8. 주거복지센터	191
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4
02. 장애인 거주시설	**196**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96
2.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197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99
4.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00
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
1. 근로사업장	202
2. 보호작업장	203
0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4**
1. 재활병원	204
2. 장애인치과	207
05. 장애인 교육기관	**208**
1. 특수교육지원센터	208
2. 장애전담어린이집	209
3. 특수학교	210

4. 부록

01. 뇌성마비 아동 성인으로의 전환	**214**
02. 성인 뇌성마비	**217**
03.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정책리포트 : 이영주 연구원	**222**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란?

1.

01. 뇌성마비의 정의

02. 뇌성마비의 원인

03. 뇌성마비의 증상

04. 뇌성마비의 분류

05. 뇌성마비의 치료

06.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뇌성마비장애란?

01 뇌성마비의 정의[1)]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어린 아이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을 뜻하며, 미성숙한 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장애는 간질 발작과 이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로 종종 감각, 지각, 인지능력, 의사소통과 행동의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의 병변, 혹은 손상은 진행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운동과 자세의 이상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뇌성마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뇌성마비아동의 반 이상은 원인을 잘 모르며, 일시적인 운동장애, 진행하는 뇌병변, 지능장애, 척수 이상에 의한 장애는 뇌성마비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림. 뇌성마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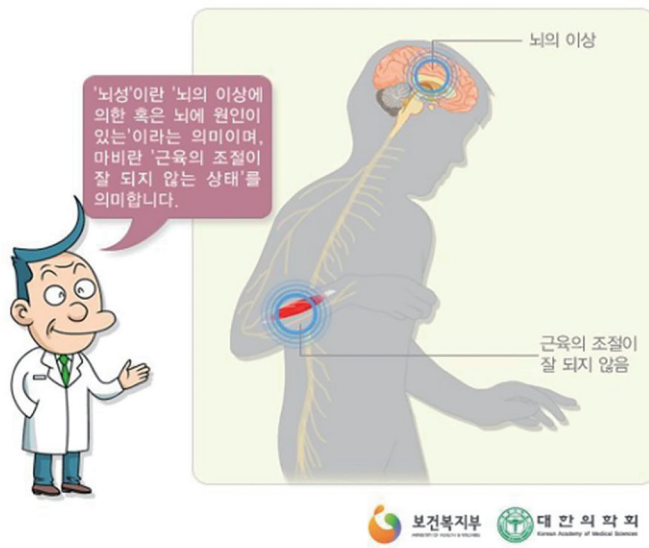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성마비=뇌병변장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 또한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유형입니다. 이에 성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운동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뇌성마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 뇌성마비를 소아마비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아마비는 발병 원인에서부터 뇌성마비와 큰 차이가 있는 질환입니다.

1)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3-7 /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라리스 외1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02 뇌성마비의 원인[2)]

뇌성마비의 75~80%는 임신 기간(출산 전, 분만 전후, 출산 후 등)동안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조산, 자궁내 발육지연, 다태임신, 태반병리, 뇌실주위백질연하증 등)에 의해 신생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출생 전에 이미 많은 뇌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이며, 출산 후 머리나 목 부위의 손상,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 및 저체중은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신생아를 조산아라고 하며, 뇌성마비의 약 50%가 조산아에서 발생합니다.
조산아의 뇌는 허혈성 및 출혈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실내출혈과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쉽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위험인자에 노출되더라도 뇌성마비가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조산아에서 뇌성마비와 같은 뇌손상이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중요 원인은 조산아일수록 자궁 내 감염 및 염증에 노출될 위험성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조산아에서 출생 전후 폐 미성숙에 의한 저산소성 환경, 고동도 산소치료, 기계보조환기에 따른 2차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삭 출산아 뇌성마비의 원인

만삭 출산아는 미숙아에 비해 뇌성마비의 상대적 빈도는 매우 낮지만 대부분의 신생아는 만삭에 태어나기 때문에 50~60%의 뇌성마비 아동은 만삭 출산아입니다. 만삭 출산아의 뇌성마비 원인을 임신 시기에 따라 출산 전, 주산기, 출산 후 원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 원인 ·····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유전적 이상, 선천성 감염, 선천성 뇌병변

주산기 원인 ·····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출산 후 원인 ····· 분만 후 신생아시기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핵황달

2)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3-19

쌍둥이 임신(다태 임신)의 뇌성마비의 원인

다태 임신 자체가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단태아보다 쌍태아는 5배, 삼태아는 13배 정도 뇌성마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태아보다 다태아에서 저체중, 조산의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태임신에서 한 쪽 태아가 사망하거나 출산 후 한쪽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아의 뇌성마비 빈도가 현저히 올라갑니다.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을 '분만가사', 또는 '주산기 가사'라고 하는데, 이는 분만 진통 중 태아에 적절한 혈액이나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산기 가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산과적 상황으로는 태반조기박리(태반이 임신20주 이후 태아분만 전에 일부분 또는 전체가 자궁에서 떨어지는 상태), 전치 태반(태반이 분만 시에 태아가 나오는 길목인 자궁 문을 가리고 있거나 자궁 문에 걸쳐 있는 상태)에 동반된 출혈, 분만 진통 중에 지속되는 태반의 기능 부전 등이 있습니다.

신생아 뇌졸중 혹은 주산기 허혈성 뇌졸중

뇌의 어느 한 부분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 조직에 산소 등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용어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만삭분만 2,300~4,000차례 중 1차례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며 편마비(Hemiplegia) 뇌성마비 아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핵황달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해 적혈구가 파괴되어 그 안에 있던 비결합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중에 늘어나게 되면서 뇌손상까지 일으키고 이로 인해 특징적인 뇌성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혈액형 부적합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핵황달로 인한 뇌손상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03 뇌성마비의 증상[3)]

뇌의 운동 신경 부분이 손상되면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뇌며, 뇌성마비가 침범한 부위 및 양상,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를 동반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장 발육 지연과 보행 및 운동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신체운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 이외에도 감각·인지·의사소통·행동 장애 및 경련성 질환·사시와 같은 안구운동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강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음식의 섭취가 곤란하고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 호흡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가 심하거나 지적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뇌손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흔히 간질과 같은 경련성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04 뇌성마비의 분류[4)]

뇌성마비라는 질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의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예후에 관한 상담·치료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류를 통해 뇌성마비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뇌성마비는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경중도(심한정도)와 예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분류법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9-21
4)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37-42 /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2-32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경직형(Spastic type)

경직성(spasticity)이란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근육의 긴장성이 증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2/3가 경직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직성 및 변형에 대해 물리치료, 석고고정, 바클로펜(baclofen), 보툴리눔독소 주사(botulinum yoxin-type A), 선택적 척수 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정형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긴장이상형(Dystonic type)

대뇌기저핵(basal ganglia)의 이상이 주된 병변으로 수의운동(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자세 유지 시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이며 불규칙하게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불수의운동(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1/4에 해당하며, 수의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긴장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고 수면 시에는 소실됩니다. 근긴장이상형은 경직형에 비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실조형(Ataxic type)

평형감각장애와 협동운동장애 등 소뇌의 기능장애로 오는 증상으로 뇌성마비 인의 1% 미만이며, 근긴장이상형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운동은 없고, 보행 시 잘 나타납니다. 운동실조형은 경직형 사지마비와 구별해야 하는데, 운동실조형은 성장함에 따라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혼합형(Mixed type)

상기 2종류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혼합형이 10% 정도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10%정도가 혼합형으로 대부분 경직형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합니다.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편마비(Hemiplegia)

편마비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약 30%를 차지하며, 같은 쪽의 상지와 하지가 이환되는 형태입니다.
마비 증상은 몸통 근처 부위보다는 몸통과 먼 쪽 부위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며, 상지에서는 50~60%의 감각 결손이 있고 주로 고유감각(위치감각, 압박감각, 운동감각, 진동감각 및 심부지각의 총칭)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 결여의 빈도가 높고, 사시나 반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뇌성마비아동이 보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일반 지능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측마비(Diplegia)

양측마비는 주로 하지를 침범하며, 양측이 대칭적입니다. 상지의 이환도 있으나 하지에 비해서 증상이 경한 양상을 보이며,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도 상지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양측마비는 백질연화증(미숙아의 뇌실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의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Quadriplegia)

양측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중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저산소, 혹은 무산소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경련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75%의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지능저하가 나타납니다.
침흘림, 연하·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며, 2차적으로 영양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은 힘들며, 성장기간 중 척추 측만증 및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시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림. 침범된 부위에 따른 뇌성마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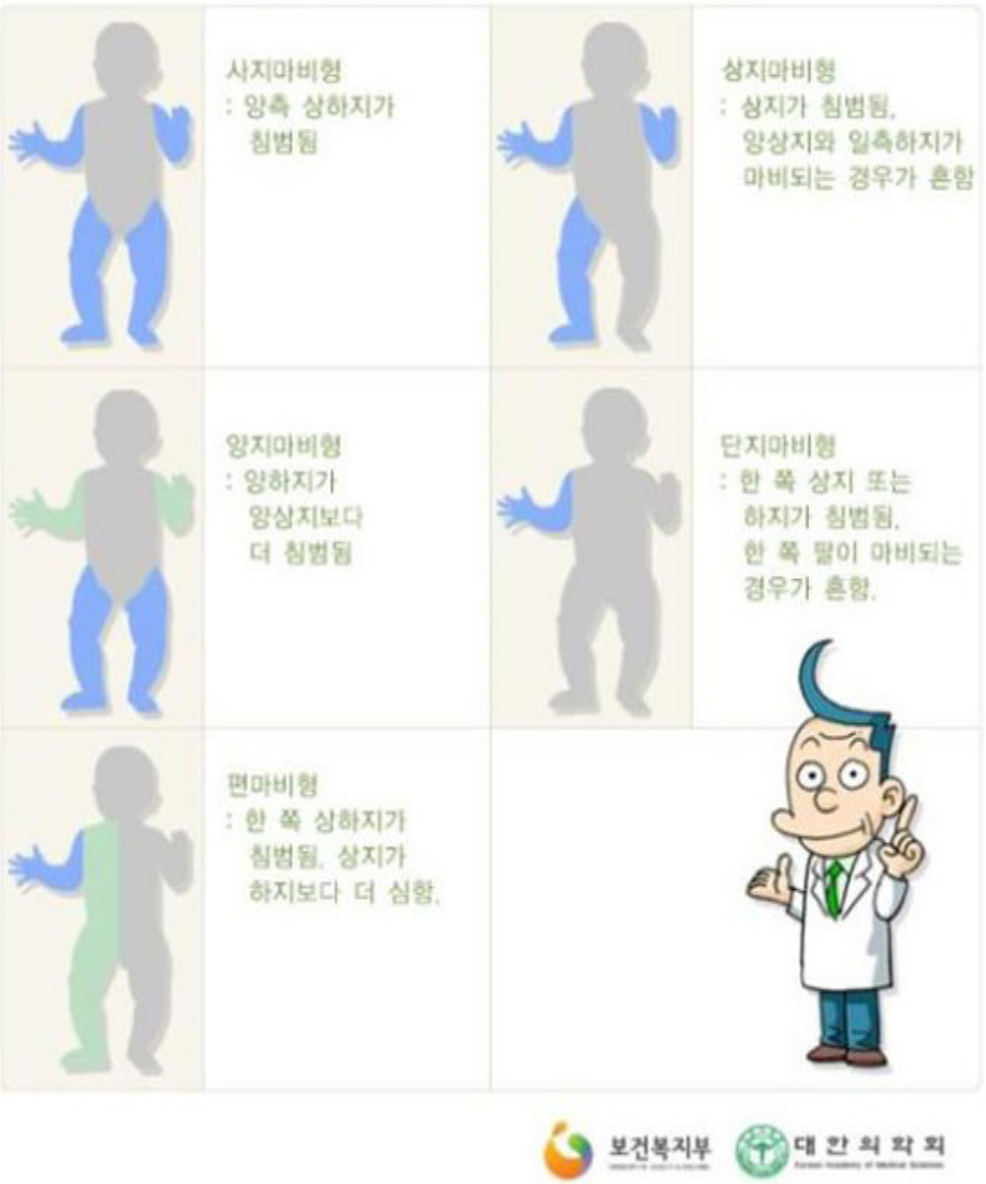

5)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35-240 /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P398

05 뇌성마비의 치료[5)]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란,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물리치료는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이는 근 긴장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자세반응을 경험하게 하여 머리와 몸통의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직형 아동은 관절가동범위를 확대하여 구축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정위형 아동은 근위부를 안정시켜 정중선 유지 및 대칭성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과 수의적인 움직임을 증진시켜 아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는 주로 상지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며, 미세동작 호전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손 협응 능력, 적절한 자세,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고, 물건을 쥐거나 조작하기에 앞서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작업치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 놀이 등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킵니다.

언어치료(Speech language Therapy)

뇌성마비 아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서 조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보이면서 전체 아동의 75~85%가 언어장애를 보입니다(Love&Webb,2001). 뇌성마비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현되는 장애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다분야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하며, 주로 자세, 호흡, 발성, 조음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스노젤렌치료(Snoezelen Therapy, 심리안정치료)

스노젤렌은 학문적으로 "킁킁거리며 냄새 맡는 것"과 "꾸벅꾸벅 조는 것"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를 합성한 것으로,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활동입니다. 스노젤렌치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격리수용, 보호, 관리의 관점에서 변화하여 그들도 만나는 사람, 접하게 되는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스노젤렌치료는 뇌손상 환자 및 치매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 심리적 이완이 요구되는 성인 및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바스치료(Bobath Therapy,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의 기본개념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관절운동, 자세잡기, 정상 운동패턴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 원시반사를 억제하며 자동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운동 양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몸통 부위(근위부)에 있는'키 포인트 조절점'에서 시작되며, 키 포인트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머리, 목, 척추, 어깨나 골반 등에 위치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치료하는데, 조절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보이타치료(Vojta Therapy)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고유감각 자극을 주어 반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 이동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 뒤집기(reflex turning)와 반사적 기기(reflex creeping)를 유발하는 방법을 쓰며, 주로 1세 이하 영아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신체와 환경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감각통합이라 하며, 이를 통해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치료법입니다. 전정(vestibular), 위치(proprioceptive) 및 촉각(tactile)이 특히 학습과 운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감각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 행동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감각통합치료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의 인지, 기억, 운동계획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학습장애 및 자폐증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뇌성마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치료(Aquatic Therapy)

수치료는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 관절 움직임, 유산소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로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승마치료(Hippo Therapy)

1950년대에 소아마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최근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마를 통해 근 긴장도, 균형, 몸통 조절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 치료 매개 동물인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도 된다는 가정 하에 시작된 치료입니다.

연하치료(Deglutition Therapy)

연하치료란,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식이조절 및 자제 조절을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입니다. 삼킴은 음식을 구강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50가지 이상의 신경 및 근육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만약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삼킴 시에는 액체나 음식물이 기도 혹은 폐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호흡과 잘 조화를 이루게 돕습니다.

심리치료(Psychology Therapy)

심리치료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법으로 종류는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회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이것이 아동시기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2차적 손상인 통증으로 인한 강박증·예민성·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06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의사소통[6]]

1. 장소를 이동해주세요!

뇌성마비장애인은 근 긴장 이상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주변 환경에 소음이 있는 경우 뇌성마비장애인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2. 속도에 맞춰 대화해주세요!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장애인은 대화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화 시 천천히 얼굴과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귀를 기울여 주세요.

3. 기다려주세요!

뇌성마비장애인은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신체에 경직이 심하게 나타나 대화가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끊거나, 대신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4.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뇌성마비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목소리의 손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화 시 말의 리듬이나 목소리의 높이가 아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질 것 입니다.

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ommunicating with people with cerebral palsy

5.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주세요!

소리 내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및 어플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주세요.

6. 적극적으로 대화해주세요!

일부 뇌성마비장애인은 발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해하기 힘든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표현언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어떻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를 표현하는지 찾아낸다면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화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듣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언어를 포함하든 아니든 어떤사람에게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데 조금의 노력이 필요할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고 또한 대화하길 희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해주세요.

[이동지원 시]

1.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세요!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근긴장도가 올라가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출발하거나 또는 정지 등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보행이 가능하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등에서는 부축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드립니다.

수동휠체어를 타는 뇌성마비장애인은 스스로 바퀴를 밀어 이동하지만, 간혹 고르지 못한 바닥·경사로·높낮이의 차이가 있거나 틈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 외에 유의사항

뇌성마비장애인은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관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장애인을 대할 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과잉보호나 과잉염려, 과도한 친절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동정이나 참견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한 후 행동합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 일부라 생각하고 붙잡거나 기대지 말아야합니다.

다과 및 음료수 접대 시, 포크나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뇌성마비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문이나 협소한 구간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2.

01. 경제적 지원

02. 의료·재활·건강 지원

03. 임신·양육·교육 지원

04. 일상생활 지원

05. 주거 지원

06. 취업 지원

07. 보조기기 지원

08. 법률 지원

09. 문화여가 지원

01. 경제적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가능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재산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2,0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신청기간

연중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14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원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장애아동수당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3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40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8만원	40만 3,180원 • 부가급여 40만 3,18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9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최고 34만 3,180원 •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4만원

* 차상위계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 되나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부모급여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별도로 받게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원(이 중 5만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원 지원)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www.adongcda.or.kr)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

대상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1983.01.01~2008.12.3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구분	중위소득 기준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중인 자는 신청 제외

내용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통장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
매칭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매칭 지원금은 서울시 지원(정액)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매월 적립 시 (총36회)
만기적립금(3년)	90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1,260만원 + 이자	

방법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

- 다산콜센터(☎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저축계좌 (I, II)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II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 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II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녀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원 지급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원)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table>
<tr><th colspan="2">감면내역</th><th>지원내용</th><th>방법 및 문의</th></tr>
<tr><td rowspan="2">통신
요금</td><td>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td><td>•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td><td rowspan="2">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td></tr>
<tr><td>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td><td>•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원까지 감면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td></tr>
<tr><td colspan="2" rowspan="4">각종 공공요금</td><td>• 상·하수도요금 감면</td><td>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td></tr>
<tr><td>•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td><td>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td></tr>
<tr><td>• 전기요금 감면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tr><td>생계급여·
의료급여</td><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td></tr><tr><td>주거급여·
교육급여</td><td>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td></tr></table></td><td>한국전력(☎ 123)</td></tr>
<tr><td>•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td><td>시군구에서 일괄 면제</td></tr>
</table>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대상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와 만 13세 이하 자녀

내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방법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으로 신청

문의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02. 의료·재활·건강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 지급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원 추가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 (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외래 포함)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table>
<tr><th>구분</th><th>조건</th></tr>
<tr><td>소득</td><td>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9만 4,680원, 지역가입자 15만 4,270원) 이하</td></tr>
<tr><td>재산</td><td>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td></tr>
<tr><td>의료비 부담수준</td><td>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table>
<tr><th>소득구간</th><th>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td><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td><td>(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2023년 기준 120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td></tr>
<tr><td>기준중위소득 100% 이하</td><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td></tr>
</table>
※ 상기 기준은 진료개시일이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td></tr>
</table>

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
<tr><td>지원비율</td><td>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table>
<tr><th>소득구간</th><th>지원비율</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td><td>80%</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td><td>70%</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td><td>60%</td></tr>
<tr><td>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td><td>50%</td></tr>
</table></td></tr>
<tr><td>지원한도</td><td>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td></tr>
<tr><td>개별심사</td><td>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td></tr>
</table>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r>
<tr><td>일반
건강검진</td><td>•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시행)</td></tr>
<tr><td>암검진</td><td>•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td></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table>
<tr><th>구분</th><th>(1차)
생후
14~
35일</th><th>(2차)
4~6
개월</th><th>(3차)
9~12
개월</th><th>(4차)
18~24
개월</th><th>(5차)
30~36
개월</th><th>(6차)
42~48
개월</th><th>(7차)
54~60
개월</th><th>(8차)
66~71
개월</th></tr>
<tr><td>건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강
검진</td><td>-</td><td>-</td><td>-</td><td>○
(18
~29)</td><td>○
(30
~41)</td><td>○
(42
~53)</td><td>○
(54
~65)</td><td>-</td></tr>
</table></td></tr>
<tr><td>학생
건강검진</td><td>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td></tr>
<tr><td>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td><td>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td></tr>
</table>

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
<tr><td>일반
건강검진</td><td>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table>
<tr><th>성·연령별 검사항목</th><th>실시시기</th></tr>
<tr><td>총콜레스테롤</td><td rowspan="4">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td></tr>
<tr><td>HDL콜레스테롤</td></tr>
<tr><td>트리글리세라이드</td></tr>
<tr><td>LDL콜레스테롤</td></tr>
<tr><td>B형간염</td><td>40세</td></tr>
<tr><td>골밀도검사</td><td>54, 66세(여성)</td></tr>
<tr><td>인지기능장애</td><td>66세 이상 2년 1회</td></tr>
<tr><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td>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td></tr>
<tr><td>생활습관평가</td><td>40, 50, 60, 70세</td></tr>
<tr><td>노인신체기능</td><td>66, 70, 80세</td></tr>
<tr><td>치면세균막검사</td><td>40세</td></tr>
</table>
</td></tr>
<tr><td>암검진</td><td>
• 위암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td></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td></tr>
<tr><td>학생건강검진
(교육부)</td><td>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td></tr>
<tr><td>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td><td>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td></tr>
</table>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장애친화 건강검진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22개소 지정하여 11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예정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1개소) 방문하여 검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등을 제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대상 지역 주민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대상 만 19~34세 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89년생~2004년생, 소득기준 없음

내용 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사후검사 총 10회 제공(재판정 시 연장 가능)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3. 임신·양육·교육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방법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고, 보충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 또한, 고혈압·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 상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내용

기저귀(월 8만원) 및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8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원	월 10만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7만 9,000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 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
구강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보료 80% 이하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2010.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내용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8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RV5	3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내용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수두	VAR	1	1차(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EV (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9월경)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확대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개 참조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희망드림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내용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3,29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11,297원 (85%)	1,993원 (15%)	9,968원 (75%)	3,322원 (2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7,974원 (60%)	5,316원 (40%)	6,645원 (50%)	6,645원 (5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0,080원	-	14,400원	-	14,400원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 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다함께 돌봄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18:00(필수 운영시간)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오전(07:00~09:00), 야간(20:00~22:00) 일일 4시간 연장 운영

※ 운영 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 가능

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4만 6,067원, 지역 33만 5,569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내용

- 매월 17~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자주 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언어발달 지원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내용
- 매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교육부(☎02-6222-60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문의 교육부(☎02-6222-6060)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내용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온맘'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종합시스템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온맘교실을 통해 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양교육 및 행동지원 방법 등을 안내
- 온맘TV를 통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참고

문의 국립특수교육원(☎041-537-1500, https://nise.go.kr/onmam)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상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내용

매월 장학금(25~45만원)을 장학금 카드로 지급하며, 1:1멘토링,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
- (SOS장학금)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으로 지원

방법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담임교사, 교내 장학 담당교사, 학교복지사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https://eduman.kosaf.go.kr)하여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문의

-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을 하나의 유형(꿈장학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선발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고교학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디지털배움터.kr), 정보화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내용 지원인원 57,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매년 1~2월 신청 접수)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안내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개설(시작)하는 강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은 결제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NH농협은행(방문) 또는 NH농협카드(온라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됩니다.

04.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등록신청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4만 7,000원), 자립준비(31만 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1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상 등록장애인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대상 방문요양, 긴급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내용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방법 시도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문의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서울	성동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노인) 02-2038-8343 (장애인) 02-2038-8286
	은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2088-8539
	강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735-7000
	노원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노인요양/돌봄서비스) 02-938-5552
	마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돌봄SOS	02-3137-0101
	영등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3489-8870
	송파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49-6401
	양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49-2601~3
	도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992-0011
	중랑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51-2801
	강동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483-7111
	서대문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02-6953-3388
대구	남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틈새돌봄	053-472-1236

문의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대구	북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틈새돌봄	053-324-2235
인천	부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동지원(사랑의열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틈새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032-721-7193
	강화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032-721-7180
광주	서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지자체 시범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iot돌봄서비스	062-716-2400
	북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지자체 시범사업(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iot돌봄서비스	062-716-6300
	광산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iot 돌봄서비스	062-716-5600
대전	유성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 통합돌봄, 긴급돌봄	042-331-8997
	서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틈새, 통합돌봄,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	042-331-8994
세종	남부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044-850-8170
	북부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044-865-7033
경기	부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역사회통합돌봄, 신중년일자리사업(긴급돌봄)	070-7709-6846
	남양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역사회통합돌봄	031-562-8579
강원	춘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의료급여사업	033-262-2111

문의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강원	원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코로나19외 긴급돌봄(더돌봄)	033-735-1122
충남	예산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041-337-3371
	천안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돌봄이음	041-555-5593
전북	전북종합재가센터	방문목욕, 긴급돌봄,틈새돌봄(농촌 등 찾아가는서비스)	063-902-0022
	장수군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063-938-9830
전남	동부(순천) 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노인맞춤돌봄	061-746-9960
	서부(목포) 종합재가센터	틈새(긴급)돌봄서비스	061-277-9836
경남	김해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통합돌봄선도사업, 틈새돌봄서비스	055-328-8279
	창원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틈새돌봄서비스	055-297-8279
제주	제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틈새(긴급)돌봄서비스	064-746-6555
	서귀포종합재가센터	노인맞춤돌봄, 방문요양, 틈새(긴급)돌봄서비스, 장애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064-762-8555

돌봄SOS센터 사업(서울시)

대상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연령)

내용

돌봄과 관련한 어려움, 특히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은 서비스별 수가와 한도 책정

5대 돌봄서비스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돌봄 제도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모든 시민 이용가능)

만 50세 이상 성인 및 장애인 중심 지원(중위소득85% 이하 시민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 부담)

※ 코로나19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한시 전액 지원(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방법

돌봄매니저가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직접 파악한 후 적합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약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대상

구분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돌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가족·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등급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중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내용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

구분	지원내용
코로나19 긴급돌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지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문의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 이용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광군, (경북) 상주시, 예천군, (경남) 통영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300점(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이고, 주 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로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제외)

- X1 점수 30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기가구의 경우 구청장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 주 보호자가 있더라도 연령, 건강 등으로 실질적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야간에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면 시 체위변경, 넬라톤 사용, 기저귀 교체, 대·소변 처리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내용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순회돌보미(야간 순회방문 서비스제공인력)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위기상황 대비 서비스를 제공
- 방문시간 및 횟수 : 22시~익일 6시, 2~3회 순회방문(1회 약 10~30분 소요)
- 돌봄 서비스 내용 : 체위변경, 배뇨도움(넬라톤 사용), 대소변 지원, 응급상황 확인 등

※ 정맥약품 투여, 석션 등 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제외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알려드립니다

2023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2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8
3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4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5	구로구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알려드립니다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6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02-2092-1700
7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2-959-5603
8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2-2536
9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0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63-3042
11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12	송파구	우리장애인지원센터	02-449-5040
13	양천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02-2698-9191
14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02-389-7708
15	종로구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	02-3673-3966
16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장애인콜택시

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기존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은 휠체어 이용시 이용 가능

④ 기존 등록 고객(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⑤ (병원 진료 및 치료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자” 및 “치료기관” 내용 포함 필수

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 운행차량
  - 리프트, 슬로프 장착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미니버스, 서울장애인버스
-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 주간 07:00~22:00(15시간) / 야간 22:00~익일07:00(9시간)
-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인천국제공항

내용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 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 이내 km당 28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방법 전화, 문자,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문의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 인터넷콜센터 누리집(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1588-43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서울시)

대상

임신(출산2개월전)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여성장애인

내용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홈헬퍼 지원(무료)

- 산전지원 및 산후조리, 외출지원(산부인과, 소아과 등), 정서지원(말벗 등)
- 유아기 자녀 놀이, 아동학습지도 및 독서 등 자녀양육 가사활동

방법

대상자 선정	▶	홈헬퍼 선발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소득기준 등 적격심사 선정		관련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홈헬퍼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30시간~120시간

문의

서비스 수행기관 문의

알려드립니다

2023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02-3411-9581
2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3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
4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5	구로구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02-830-6500
6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1-1711
7	노원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알려드립니다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8	노원구	다운복지관	02-3296-2114
9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10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1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12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23
13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14	송파구	방이복지관	02-3432-0477
15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교육 접수 가능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대상이 아니여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 – 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 – 국립재활원 – [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 – 국립재활원(하이재활) – 장애인운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초과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 이상 ~ 만6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내용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의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한도)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 상시 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서 개별통보

※ 수행기관 – 서울 내 장애인복지관 25곳(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확인)

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MI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 (2020.01.01.이후 발급서류)

④ 복지카드사본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⑥ 통장사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증빙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70-4242-5997, 5998 / www.together-seoul.org)

서울시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등록자 중(최근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성인기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 최중증 장애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뇌병변장애인

※ 현재 정기적으로 시설입소 중이거나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는 미대상

내용

- 주 4~5회 이용, 이용료(수급자 면제, 차상위50%감면) 개별부담, 식대 별도
- 돌봄서비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문의

서울시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각 수행기관

알려드립니다

2023 낮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8
2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3	노원구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4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4415
5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05. 주거 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23.8.(1년간)
  - (지급기간) '22.11.~'24.12.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 등 일정 조율과 진료 당일 병원에 동행하여 검사, 수납까지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5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6~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어르신 등 진료 지원 : 7~11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 kWh/m^2 →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 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대상

계층	입주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대상

계층	입주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대상

구분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대상

구분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 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원, 광역시 최대 9,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200만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원, 월임대료 23만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원, 월임대료 32만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 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방법

읍면동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23.2월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원 연납 허용)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06. 취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201만 58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100만 5,29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3만 8,7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26만 22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26만 220원

- 근무기간 :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중증장애인 80%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발달장애인 80% 이상)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주요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 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구분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Ⅱ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Ⅱ유형] 심층 집중상담	
2단계 (구직역량 강화)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10만원
		장애인 직업훈련 (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10만원
		[Ⅱ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구직역량 강화(2단계), 고용안정(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활근로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디지털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원 지급
식비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및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7. 보조기기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내용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재원 및 문의처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보조기기 38품목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차상위계층 포함)	9종 83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록장애인(개인부담 20%) 수급자 및 차상위(개인부담 10%) 국가유공자	시각 66종, 지체·뇌병변 22종, 청각·언어 37종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보조기기 52품목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보조기기 28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	51종	국가보훈부 (☎1577-0606)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	보조기기 28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급품목의 수량과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영역	사진	설명
자세유지 보조기기		올바른 자세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종 벨트 및 서포트 장치를 통해 앉기, 서기,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 품**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피더시트 등
이동 보조기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 품** 휠체어, 전·후방지지워커, 전동스쿠터 등
일상생활 보조기기		장애인이 식사, 용변, 목욕, 의복착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 품** 목욕의자, 이동용 변기, 식사보조도구, IoT기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제 품** gotalk, 마이토키, 키즈보이스, 어플(스마트AAC, 진소리) 등

영역	사진	설명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장애인의 직업,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 품 작업테이블, 필기보조도구, 페이지터너 등
감각 보조기기		시·청각 장애인이 컴퓨터, 독서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 품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S/W, 음성증폭기 등
여가 보조기기		장애인의 여가, 레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 품 특수자전거, 스포츠용 휠체어, 카드혼합기, 해변용휠체어 등
IT 접근 보조기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세한 신체부위를 활용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 품 빅키보드, 조우스, 롤러조이스틱, 안구마우스 등

08. 법률 지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무료 법률상담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내용
- 방문상담 : 전국 134곳 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방법 예약(필수)* 후 상담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www.klac.or.kr)

법률홈닥터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방법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문의

- 상담 문의 :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제도 운영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마을변호사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내용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방법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 법무부(☎02-2110-3500)

마을세무사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필수)*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09. 문화여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에도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23.1.9.~1.13. 기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 기간 : 2023.1.16.~1.19.(자동재충전 완료 후 문자 안내)

※ 2023.2.1. 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 후, 수급자격이 있는데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재충전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9~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내용

1인당 매월 9만 5천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매년 11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1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예정)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원)을 6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방법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3.11.30.까지
  - 정기(1차) : 기존대상자(54,000명)
    - 신청 : '23.1.2. 9시~1.31. 14시
    - 선정 : '23.2.21. 14시
  - 추가(2차) : 한부모가족 대상(6,000명)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알려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안내

1. 장애인 접근성 픽토그램

장애인 화장실

일반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일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없음

장애인
단독접근 가능

장애인 이용시
동반자 권장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수유실

장애인 이용
매표소

장애인 이용
안내소

지하철
접근 가능

저상버스
접근 가능

유모차 대여

유아용
의자 대여

외국어 안내

장애인 객실

2. 장애인 여행 정보사이트

구분	사이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https://access.visitkorea.or.kr/ ☎ 033-738-3000
서울다누림관광	https://www.seouldanurim.net/ ☎ 02-1670-0880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korean.visitkorea.or.kr
무장애 경기관광	https://bf.ggtour.or.kr/ ☎ 031-259-4700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http://www.jangtour.org/ ☎ 054-745-2255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http://www.wheeltour.or.kr/ ☎ 053-633-8001
제주관광정보센터	https://www.visitjeju.net/ ☎ 064-740-6000

3. 장애인 여행 관련 여행사

구분	사이트
곰두리 여행	http://www.gomduritour.com ☎ 02-6383-1000
두리함께(제주도)	http://www.jejudoori.com ☎ 064-742-0078
어뮤즈트래블	https://www.amusetravel.com/ ☎ 02-719-6811~5
에이블투어(주)	http://www.abletour.kr ☎ 031-843-1101
유니버셜디자인투어	http://www.wheelchairtour.co.kr/ ☎ 02-736-7047
모두를 위한 관광	www.tourforall.net ☎ 031-978-0755

스포츠활동

1. 장애인체육 경기종목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수영, 승마, 사이클,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배구, 축구, 탁구, 볼링,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휠체어컬링, 태권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스노보드, 슐런 등

2. 주요 스포츠 종목

보치아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 제 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보치아 개최되었으며,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주체로 1990년 제 1회 전국뇌성마비인 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음. 개인전 경기와 2인조 경기는 4엔드, 단체전은 6엔드로 이루어지며, 개인 경기 선수는 3번과 4번 던지기 구역에서 경기하고 단체 경기는 1, 3, 5번(홈 사이드), 2, 4, 6번(어웨이 사이드)까지 던지기 구역을 사용하여 경기함. 선수들은 공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거나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냄. 6개의 빨간색 공과 6개의 파란색 공을 가지고 각 선수가 매 회마다 상대방의 제일 가까운 공보다 표적구에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씩 부가하며 마지막 엔드에 점수를 합산하여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함.

※ 문의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02-930-8180, http://koreaboccia.koreanpc.kr/)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

축구경기는 유형별로 5인제 시각장애인,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11인제 지적장애인, 11인제 청각장애인 부분으로 실시함.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는 국제 축구 평의회(IFAB)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각 팀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7명의 선수로 구성됨. 축구경기는 FT1. FT2, FT3등급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당 최대 3명~5명까지 선수교체가 가능함. 각 팀은 경기시간 동안에 반드시 FT1 선수를 최소 1명 이상 출전시켜야하며, FT3 선수는 최대 1명만 출전 가능함. 경기는 전·후반 30분씩이며 전·후반 사이의 휴식기간은 15분 이내임.

※ 문의 : 대한장애인축구협회(☎02-735-5851~3, http://kofad.koreanpc.kr/)

파크골프

파크골프의 어원은 Park(공원) + Golf(골프) = Park Golf(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의 의미임. 즉,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장애인과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연인, 직장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임. 파크골프는 타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를 1홀이라하고 9홀이 하프 18홀이 1라운드로 이루어짐. 1홀의 거리는 20~100m이고, 파는 3~5타로 설정되어짐. 코스에는 Fairway, 벙커, 러프, 그리고 플레이를 금지하는 OB지역이 있음. 룰을 위반한 경우 2타를 더 가산하는 패널티가 부여되며, 모두 2타 벌칙이 있음. 1라운드는 18홀로 스트록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가 일반적임. 4인 1조로 진행되며, 18홀 기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됨.

※ 문의 : 대한장애인골프협회(☎070-7712-6700~3, http://kdpga.koreanpc.kr/)

슐런

네덜란드 전통놀이인 슐런은 실내에서 이뤄지는 핀볼 게임의 일종임. 네 개의 홀이 있는 폭 41cm, 길이 2m의 '슐박'에 나무토막으로 만든 원반 '퍽(Puck)' 30개를 밀어 넣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임. 1경기는 3쿼터로 진행되며 30개를 밀어서 관문에 넣고, 들어가지 않은 퍽은 수거해 2,3쿼터를 추가 진행함. 이렇게 3쿼터가 모두 진행된 두 관문막대에 들어간 퍽을 최종 합산해 점수를 매김. 퍽이 시점막대를 완전히 지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퍽이 시점막대를 지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사용된 퍽에 닿으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개인 및 단체전이 있으며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단체전에 중복 출전할 수 있으며, 단체전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 : 대한장애인슐런협회(☎02-2157-4241, www.nkdsa.org)

시설안내

3.

0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02. 장애인 거주시설

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0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5. 장애인 교육기관

0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직업지원,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문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내 회원기관 참조 (www.hinet.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남구	강남세움복지관	02-2184-8700	종합
2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02-445-8006	종합
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02-3411-9581~3	종합
4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종합
5	강동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종합
6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8	종합
7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뇌성마비
8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종합
9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2-877-0750	종합
10	광진구	정립회관	02-446-1237	지체
11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02-830-6500	종합
12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1-1711	종합
13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	종합
14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뇌성마비
15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종합

연번	지역	기관명		비고
16	노원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02-935-6376	지체
17	노원구	성민복지관	02-931-7970	종합
18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77	종합
19	동대문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927-0063	종합
20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종합
21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종합
22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종합
23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종합
24	서초구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02-2055-0909	종합
2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00	종합
2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종합
27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2-3432-0477	지체
28	송파구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02-431-8881	종합
29	양천구	양천해누리복지관	02-2061-2500	종합
30	영등포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종합
31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종합
32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종합
33	은평구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02-6951-0301	종합
34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70	종합
35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02-2235-8630	종합
36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4	종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 및 교육, 야외활동,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wis.seoul.go.kr) 및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www.kdda.or.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2662-3491~4	뇌성마비
2	강서구	주간보호센터 햇볕교실	02-2663-0670	지적·뇌병변
3	강서구	40+금곡행복쉼터 주간보호센터	070-7576-2706	뇌성마비
4	관악구	갑을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6414-8586	뇌성마비
5	광진구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	02-446-1237	지체·뇌병변
6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02-932-4415	뇌성마비
7	노원구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02-6928-7350	지체·뇌병변
8	노원구	지앤지주간보호센터	02-998-2855	뇌병변
9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02-1066	지체·지적·뇌병변
10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 주간이용센터	02-359-1000	뇌병변
11	마포구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276-1860	뇌성마비
12	서초구	서리풀주간이용센터	070-7209-2940	뇌병변
13	송파구	THE채움	02-2043-8460	지적·자폐/ 뇌병변(중복)
14	용산구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02-713-5050	지체·뇌병변
15	은평구	기원주간보호센터	02-353-1367	지체·뇌병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 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

문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 회원센터 참조(www.koil.kr)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내 회원기관 참조(www.scil.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02-518-2197
2	강남구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9-3766
3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1213
4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5	강동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02-441-2313
6	강동구	서로서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2-426-3291
7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8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80-5292
9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2-0946
10	강서구	강서송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98-1007
11	강서구	강서웅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68-5588
12	강서구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1-2692
13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14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15	강서구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5-0420
16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82-0295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7	관악구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42-3773
18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19	관악구	낙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89-3322
20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21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22	광진구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67-5004
23	광진구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4-4399
24	구로구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25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26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27	금천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28	금천구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05-2250
29	노원구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02-930-8212
30	노원구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02-933-6539
31	노원구	서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2-933-8682
32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33	도봉구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0397
34	도봉구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93-6300
35	도봉구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1551
36	동대문구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66-2017
37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38	동대문구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67-4540
39	동작구	다손자립생활센터	02-2654-1235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0	동작구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289-1885
41	동작구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6-3644
42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2-2536
43	동작구	우정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949-0104
44	마포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18-4331
45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46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9-6692
47	서초구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537-9666
48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49	성동구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96-0551
50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51	성북구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3-8152
52	성북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7232
53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02-6082-6420
54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55	송파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2-0420
56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57	양천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7-0420
58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953-3053
59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60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86-8482
61	용산구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04-0420
62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63	은평구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157-0420
64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54-1724
65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83-1330
66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67	종로구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22-9921
68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69	중구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74-0420
70	중랑구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680-1207
71	중랑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72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뇌병변 장애인들의 돌봄, 교육, 건강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구로구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070-4896-5252
2	노원구	노원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070-4896-5303
3	마포구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02-702-5771

보조기기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문의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북구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2	강동구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02-440-5891~5
3	강서구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02-2662-3495
4	노원구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02-6926-6950
5	마포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02-6070-9264~9
6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	031-852-7363
7	인천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	032-540-8988
8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세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184-8787
2	강남구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70-4354-4701
3	강동구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77-6571
4	강북구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70-8915-4335~7
5	강서구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25-7025
6	관악구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878-0155
7	광진구	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55-1221
8	구로구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685-9579
9	금천구	금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6-3420
10	노원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35-2999
11	도봉구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55-7979
12	동대문구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21-2229
13	동작구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534-0535
14	마포구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717-9557
15	서대문구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358-8700
16	서초구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592-2005
17	성동구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2-7942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8	성북구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09-7901
19	송파구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48-2019
20	양천구	양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735-2600
21	영등포구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068-6466
22	용산구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1-0329
23	은평구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383-5100
24	종로구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42-2223
25	중랑구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3-0704

장애인체육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현황 참조 (https://sports.koreanpc.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동구	서울수중재활센터	02-440-5700
2	강서구	기쁜우리체육센터	02-3663-8114
3	관악구	SRC 서울센터	02-871-3636
4	광진구	정립회관(체육센터)	02-446-1237
5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02-949-9114
6	마포구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02-6070-9270
7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02-404-6240
8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02-388-6622
9	경기 고양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10	경기 고양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11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02-2616-3700
12	경기 광주시	SRC 재활체육관	031-799-3891
13	경기 광주시	성분도복지관(체육관)	031-799-0318
14	경기 성남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031-725-9500
15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031-259-0900
16	경기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수영장)	031-548-5638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7	경기 시흥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310-7875
18	경기 안산시	명휘체육센터	031-406-1145
19	경기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031-465-0950
20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032-719-4825
21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032-833-3055

주거복지센터

지원대상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지원내용
- 서울주거상담센터 : 주거비 지원, 집수리비 지원, 주거지이전 지원, 공공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양 임대주택, 토지, 상가,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하자 접수 및 상담, 주거급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서울주거상담센터 콜센터 (☎1600-3456) 또는 홈페이지(www.seoulhousing.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또는 홈페이지(www.lh.or.kr)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주거복지센터	02-3453-2270
2	강동구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3	강북구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4	강서구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5	관악구	관악주거복지지원센터	02-875-3197
6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7	구로구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8	금천구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9	노원구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10	도봉구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11	동대문구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12	동작구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13	마포구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14	서대문구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15	서초구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16	성동구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17	성북구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18	송파구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19	양천구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20	영등포구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21	용산구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22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0
23	은평구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24	종로구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25	중구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26	중랑구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0

LH 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서울권 마이홈센터	02-3416-3604
2	강남구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	02-2182-2733
3	영등포구	서울서부권 마이홈센터	02-2169-8801~2
4	종로구	서울중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00, 2722, 2733
5	경기 하남시	서울동부권 마이홈센터	031-622-2700
6	경기 김포시	김포권 마이홈센터	031-8048-5303
7	경기 고양시	고양권 마이홈센터	031-927-3056
8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권 마이홈센터	032-890-583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 가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02-6949-3133~4) / seoul.dfsc.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2	강동구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3	강북구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4	강서구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2
5	관악구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6	광진구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7	구로구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8	금천구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9	노원구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10	도봉구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11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12	동작구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13	마포구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14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15	서초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16	성동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7	성북구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18	송파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19	양천구	양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8
20	영등포구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4
21	영등포구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22	용산구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23	은평구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6
24	종로구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25	중구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26	중랑구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02.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요양·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 제공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부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www.nise.go.kr/onmam)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서구	강서희망의집	02-2605-7980	성인	뇌병변
2	강서구	선린원	02-2654-3372	성인	뇌병변·중증장애
3	노원구	사랑샘단기보호소	02-932-4635	아동·청소년 (만5세-만18세)	모든장애
4	동대문구	하늘꿈터	02-969-3927	성인(남성)	자폐·지적· 뇌병변·지체
5	마포구	한벗둥지	02-336-3100	아동·성인	뇌병변·지체
6	서대문구	다솜센터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02-372-9394	성인(여성)	뇌병변·지적·자폐
7	은평구	포도원복지센터	02-386-4020	성인(여성)	발달·뇌병변·지체
8	종로구	라파엘의집	02-739-7020	아동·성인	뇌병변·중증장애
9	중랑구	다운누리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02-434-2114	성인(여성)	지적·뇌병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립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지원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jjang2.or.kr) 참조

〈서울〉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동구	암사재활원	02-441-0407	아동	발달·뇌병변·중복장애
2	강동구	주몽재활원	070-8255-0315	아동·청소년	지체·뇌병변
3	강북구	디딤자리	02-987-6009	영유아(만0~6세)	모든장애
4	노원구	늘편한집	02-933-5228	성인	지체·뇌병변
5	노원구	쉼터요양원	02-937-5057	성인(만19~45세)	지체·뇌병변
6	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02-921-6410	아동(만4~18세)	지적·지체·뇌병변
7	용산구	영락 애니아의 집	02-754-8507	아동	뇌병변
8	용산구	가브리엘의집	02-757-1511	아동·성인	시각(필수)·중증장애
9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	02-3156-6500	성인남성	발달·지체·뇌병변·시각

〈경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광주시	SRC보듬터	031-799-3972	아동(만7세~)·성인	지체·뇌병변
2	광주시	한사랑마을	031-764-2115	아동·성인	지체·뇌병변(중증)
3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	031-764-1119	영유아(6개월~4세)	모든장애
4	김포시	해맑은마음터	031-981-7909	아동	지적·지체(뇌병변)
5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	031-559-4322	성인	발달·지체(뇌병변)
6	여주시	다산하늘센터	031-885-7771	성인	발달·뇌병변
7	이천시	새생명의집	031-634-8777	성인	발달·지체(뇌병변)
8	포천시	생수의집	031-536-0585	성인	지적·뇌병변·언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지역사회 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립생활, 사회적응, 여가생활, 정서안정 등 지원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내 시설현황(ghcenter.org)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장애유형
1	강남구	신망애공동생활가정	02-547-4186	성인(남성) / 지적·지체
2	강남구	아해하제공동생활가정	070-4898-9231	발달 / 뇌병변
3	강서구	여호와닛시의집	02-2665-0326	성인(남성) / 뇌병변·지체·지적
4	구로구	오뚜기하우스	02-6926-6925	성인(남성) / 뇌병변
5	서대문구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02-303-0867	성인(남성) / 지적·지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지원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문의 서울시복지재단(☎1670-5755) / www.welfare.seoul.kr 참조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기관〉

연번	자립생활주택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형태
1	강동구 올림픽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남(다세대)
2	강동구 천중로 / 강동구 고덕로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여(다세대)
3	강서구 공항대로 / 강서구 강서로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남(아파트), 여(다세대)
4	강서구 화곡로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남(다세대)
5	관악구 은천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여(아파트)
6	광진구 능동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남(다세대)
7	구로구 부일로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여(다세대)
8	구로구 부일로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남(다세대)
9	구로구 부일로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남(다세대)
10	노원구 노원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남(다세대)
11	노원구 노원로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여(다세대)
12	도봉구 해등로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남(아파트)
13	서초구 방배중앙로	해냄복지회	02-518-2270	남(다세대)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기관〉

연번	자립생활주택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형태
14	성동구 광나루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남(다세대)
15	성동구 마장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남(아파트)
16	성북구 동소문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7232	남(다세대)
17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 양천구 월정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남, 여(다세대)
18	영등포구 도림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남(아파트)
19	은평구 갈현로 / 은평구 증산로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750-1724	남(다세대)
20	은평구 연서로 / 은평구 증산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8	남(다세대)
21	종로구 낙산1길 / 종로구 창경궁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남(다세대), 여(다세대)
22	중랑구 겸재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02-518-2197	남(다세대)

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광진구	정립전자	02-446-6867
2	서대문구	서울특별시립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그린내	02-303-4520
3	종로구	더해봄(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02-742-0660
4	경기 파주시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031-946-7030

보호작업장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서구	강서구휴먼희망일터	070-7731-3620	
2	강서구	강서구희망센터	02-2696-3113	
3	강서구	다사랑직업재활시설	070-7792-9300	
4	강서구	행복을파는장사꾼	02-2065-1591	
5	구로구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2689-8791	
6	성동구	두빛나래보호작업장	02-6238-8822	
7	영등포구	라피드보호작업장	02-6925-0728	
8	영등포구	행복한나무	02-324-7335	휠체어 이용 불가
9	중랑구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02-977-8291	

0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재활병원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병원·약국찾기 참조(www.hira.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2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02-1544-7522
4	강남구	청담병원	02-2104-2000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110
7	강북구	국립재활원	02-901-1700
8	강서구	부민병원	02-1577-7582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02-1522-7000
10	강서구	서울큰나무병원	02-2695-1155
11	강서구	서울대효병원	02-2604-9300
12	강서구	솔병원	02-2064-7575
13	강서구	강서바른세상병원	02-2603-0300
14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02-1877-8875
15	관악구	심정병원	02-1588-3330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17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18	구로구	에이치플러스자립병원	02-1577-2588
19	금천구	서울대효병원	02-896-2114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20	금천구	서울바른세상병원	02-2111-9700
2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1899-0001
22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1661-3100
23	도봉구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114
24	도봉구	서울노보스병원	02-3492-3251
25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2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2244-0191
27	동대문구	맑은수병원	02-2681-0119
28	동대문구	하늘병원	02-2246-8750
29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02-1800-1114
30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1577-0075
31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32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33	서초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02-570-8000
34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35	성동구	제인병원	02-3408-2100
36	성북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02-1577-0083
37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3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39	양천구	서울특별시서남병원	02-1566-6688
40	양천구	라온휴병원	02-2601-2611
4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4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02-840-7121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3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02-829-5114
44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45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1899-1475
46	영등포구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47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48	용산구	금강아산병원	02-799-5000
4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1811-7755
50	은평구	연세노블병원	02-384-0009
51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52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02-3156-3000
5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02-1588-5700
54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1130
55	종로구	서울숭인병원	02-737-7582
56	종로구	로이병원	02-1644-7541
57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58	중랑구	녹색병원	02-490-2126
59	중랑구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02-2276-7000
60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02-2036-0200
61	중랑구	러스크서울병원	02-3426-0100

장애인치과

문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장애인진료치과찾기 참조(www.sndcc.org)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북구	강북구 보건소	02-901-7665
2	도봉구	도봉구 보건소	02-2091-4567
3	동작구	동작구 보건소	02-820-1437
4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02-6070-9171
5	서초구	서초구 보건소 장애인 치과	02-2155-8107
6	성동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02-2282-0001, 0012
7	송파구	송파구 방이복지관 내 장애인치과	02-3432-0477
8	양천구	양천구 보건소	02-2620-3867
9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치과	02-2030-2828
10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02-2072-3114
11	종로구	푸르메치과의원	02-6395-7020
12	중구	중구 보건소	02-3396-6485

05.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순회교육 및 치료관련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지원청 부설기관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센터현황 참조(www.sen.go.kr)

연번	지역	기관명	장소	전화번호	관할 행정구
1	강남구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대청초	02-459-1013	강남구, 서초구
2	강서구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등원초	02-2620-2400	강서구, 양천구
3	구로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영일초	02-861-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노원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	02-956-1038	노원구, 도봉구
5	동작구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문창초	02-833-2895	동작구, 관악구
6	성동구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행당초	02-2292-6411	성동구, 광진구
7	성북구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숭곡중	02-911-1078	강북구, 성북구
8	송파구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중대초	02-414-2634	강동구, 송파구
9	영등포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분원	영등포 평생학습관	02-2038-2700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10	은평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응암초	02-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1	중구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청구초	02-2027-79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12	중랑구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묵동초	02-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장애전담 어린이집

문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참조(iseoul.seoul.go.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까리타스어린이집	02-996-1556	법인·단체등
2	구로구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02-852-1628	국공립
3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02-951-6118	국공립
4	도봉구	두발로어린이집	02-999-2855	법인
5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02-999-0691	민간
6	마포구	우리마포어린이집	02-702-3100	국공립
7	양천구	신목장애아국공립어린이집	02-2643-6554	국공립
8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02-2605-9237	민간

특수학교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기관 찾기 참조
(www.sen.go.kr/sedu/sedu/index.do)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동구	주몽학교	070-8255-0505	지체·지적
2	강서구	서울서진학교	02-6981-9000	지적
3	관악구	서울새롬학교	02-840-3535	지체
4	구로구	서울정진학교	02-2688-1303	지체·지적
5	노원구	서울정민학교	02-978-8405	지체
6	마포구	한국우진학교	02-6388-5800	지체
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	02-2123-8141	지체
8	서초구	서울나래학교	02-2058-0190	지체

부록

4.

01. 뇌성마비 아동 성인으로의 전환

02. 성인 뇌성마비

03.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정책리포트 : 이영주 연구원

01. 뇌성마비 아동 성인으로의 전환

뇌성마비는 진행하지 않는 질환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2차 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히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들어가 독립적이고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둔 계획을 일찍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은 종종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 발생 장애는 정상적인 속도로 학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는 뇌성마비 장애 아동이 성인으로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뇌성마비 아동은 중요한 교육적 이정표에 뒤처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래에 또래들과 함께 궤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아기 초기에 삶의 교훈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어린이와 부모 모두에게 청소년 및 성인으로의 미래 전환을 덜 어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팁

- 유아기에 의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의사와 치료사를 찾으십시오.
- 아이들이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사교 활동과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 다양한 유형의 치료와 치료를 통해 운동능력, 운동 및 조정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아동의 강점과 한계에 따라 유치원 때부터 개별화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유아기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중요한 발달 시기입니다. 생활 기술과 독립성을 확장하는 방법에 가능한 한 빨리 초점을 맞추면 뇌성마비 아동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청소년기

각 어린이의 청소년 시절로의 전환은 독특하지만 뇌성마비가 있는 개인은 이 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변덕스럽거나 감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뇌성마비가 있는 청소년들은 추가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청소년은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사교 활동을 하거나 독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동안 미래를 지원하고 계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절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팁

- 의사소통 및 생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학교 등)을 이용하고 협력하십시오.
- 독립성과 자립을 장려하고 보상합니다.
- 대처 기술 개발에 도움
- 자녀가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병력과 필요 사항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업 치료와 같은 치료법을 활용하여 일상 기능과 소근육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뇌성마비를 가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시스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치료사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은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청소년기에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 성인기

성인기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려면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젊은 성인은 미래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흥분을 느낄 수 있지만 신체적 또는 사회적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집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녀가 초기 성인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민감하고 인생의 이 단계를 가능한 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강화하면 뇌성마비 환자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교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성인기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팁

- 뇌성마비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 훈련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에 대한 탐색 기술을 제공합니다.
- 소아 의료 시설에서 성인 진료 의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필요한 치료 조정을 수행합니다.
- 대학 진학을 위해 적합한 학교 탐색
- 취업에 대한 적절한 상담 문의
- 생활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독립성을 확립하십시오.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은 빠르면 16세부터 성인이 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계획과 준비는 뇌성마비의 유형과 증상에 따라 그들의 관심과 개별화된 요구에만 기초해야 합니다.

4. 미래를 위한 계획 시작

어린 시절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전환은 다사다난한 여정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에게는 극복해야 할 추가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보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동원 및 자립과 같은 기술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성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헤쳐나갈 때 놓아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02. 성인의 뇌성마비

뇌성마비 아동이 성인이 되면서 그들의 상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려면 동정심과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축하해야 할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뚜렷한 발달 지연이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성인은 개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최초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많은 성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덜 심각한 유형의 뇌성마비를 가진 성인은 스스로 생활하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형태의 뇌성마비 또는 공존 조건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일상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전일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찾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뇌성마비를 가진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뇌성 마비와 성인기에 대한 설명

뇌성마비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장애입니다. 뇌성마비는 뇌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부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뇌성마비는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운동 장애와 지적 장애입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노화, 걷기 또는 삼킴 장애, 손상 후 증후군, 정신 건강, 직장에서의 도전

위의 문제 중 하나 이상이 지속되면 성인으로서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의 증상은 다양한 형태의 요법, 대체 치료 방법 또는 수술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뇌성마비 및 조기 노화

최근의 의학 발전으로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의 기대 수명이 일반 인구의 기대 수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발전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 외에 노화의 영향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뇌성마비인의 경우 성인기에 종종 조기 노화가 포함됩니다. 이 상태는 실제로 노년기에 도달하기 전에 노화 징후가 조기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 20세에서 40세 사이에 뇌성마비가 있는 대부분의 성인은 어떤 형태로든 조기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신체가 겪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작은 계단을 올라가려면 그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화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증 증가, 걷기 어려움 또는 뻣뻣한 근육, 낙상 위험 증가, 치아 건강 문제, 약물이나 수술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

조기 노화의 징후는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태와 겹치지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증상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성인의 걷기 및 삼킴 장애

뇌성마비는 이미 사람의 움직임과 유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노화는 이러한 증상과 효과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근골격계 이상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걷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상태는 골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관절 표면과 관절 압박이 일생 동안 상호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은 과용 증후군과 신경 포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삼킴 장애 또는 삼킴곤란은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에게도 흔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계, 머리 또는 목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인의 연하 곤란 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음주 중 또는 직후 기침, 음식이나 액체가 입에서 새거나 입에 끼는 경우, 반복되는 폐렴 또는 흉부

울혈, 체중 감소, 영양 부족 또는 탈수, 사회적 상황에서 먹거나 마시는 것을 둘러싼 당혹감 또는 즐거움 부족

걷기 및 삼킴 장애는 몇 가지 추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그 영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뇌성마비 및 손상 후 증후군

손상 후 증후군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흔한 상태입니다. 많은 증상이 뇌성마비 및 기타 관련 상태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 후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육 이상, 뼈 기형, 과사용 증후군 및 관절염으로 인한 쇠약, 통증 증가, 피로, 반복성 긴장 장애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은 걷거나 움직일 때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손상 후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발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작업 치료사와 같은 초기 성인기에 걸쳐 다양한 치료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6. 뇌성마비와 직장

다른 젊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뇌성마비가 있는 개인에게 말하기나 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접, 지원 또는 직장에서 자신의 상태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일 2016.8.4]]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 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자신의 권리와 뇌성마비 증상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성인은 제한 없이 자신의 꿈과 열망을 계속 추구할 수 있습니다.

7. 뇌성마비와 정신 건강

뇌성마비와 같은 상태는 삶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성마비를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정신 건강 상태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장애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입니다.

발달 소아과 의사인 Dr. Gregory Liptak이 수행한 연구에서 뇌성마비 성인은 전체 인구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고용, 결혼 및 독립생활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울증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을 않거나 너무 많이 자고, 먹지 않거나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폭식 장애), 죽음이나 자해에 대해 이야기하기, 한때 즐거움을 가져다 준 활동을 완료하려는 욕구 부족

불안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빠른 심장 박동, "불안"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 현기증, 떨림, 과도한 발한 또는 메스꺼움, 다른 사람이나 낯선 장소와 관련된 일을 피하는 것, 작은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우울증과 불안은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장애이지만 여전히 다른 정신 건강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와 같이 다양한 신체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의사와 전문가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가 있는 성인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 가능한 징후를 사전에 추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면한 정신 건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완전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치료, 약물 치료 또는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될 것입니다.

8. 뇌성마비 환자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장애로 시간이 지나도 악화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개인의 기대 수명은 일반 인구의 기대 수명과 비슷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성마비의 증상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 장애물을 제시할 수 있지만 치료, 수술, 약물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성인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결단력을 유지함으로써 뇌성마비를 가진 개인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흥분을 느끼며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뇌성마비 가이드 : https://www.cerebralpalsyguide.com 참고

03.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Ⅰ. 뇌병변장애 정책 지원 동향

1.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기반 마련 –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1) 서울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지금까지의 장애인 지원 정책 대부분은 생활수준 혹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장애유형별 지원으로 세분화 되는 추세임. 이에 뇌병변장애인 지원의 필요성과 뇌병변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2019년 9월 건강지원, 돌봄지원, 인프라 확충, 권익 증진 등 4개분야 26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함.

2)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 종합지원시설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립

: 진학 및 취업이 어려운 성인 중증 뇌병변장애인(만18~64세)을 대상으로 돌봄,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 건강관리 서비스등을 제공하며 2021년 마포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첫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개소를 조성할 계획임.

3) 지체/발달장애인 중심 지원정책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 필요

: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지만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관련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앞으로 증가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Ⅱ.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

1.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1)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구의 약 11%

: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수는 394,843명이며,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41,30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임. 65세 이상이 56.4%이며, 50~64세 25.7%, 20~49세 13.2%, 19세 미만 4.7%순으로 나타나며 뇌졸중(70%), 외상성 손상(11.4%), 뇌성마비(6.9%) 순임.

2) 뇌병번장애인의 10명 중 9명은 후천성, 40대에 장애 발현이 가장 많고 대부분 중복장애 동반

: 세부 장애유형별 발생 시기가 다르며, 뇌성마비는 대부분 선천적 장애이나,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증은 대부분 성인기에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로 뇌병변장애인의 86.7%는 후천성임. 최초 장애가 발생하는

시기는 40대(26.6%), 10세 미만(26.2%), 50대(18.9%)순으로 뇌성마비를 제외한 세부 장애유형은 50세 이상 고연령층임. 뇌병변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은 중복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많아 신체적 기능 퇴화, 건강상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 등 중복장애를 수반 함.

2.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실태

1) 뇌병변장애인은 절반 가까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평일 주로 집에서 지냄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제한적인 환경 여건으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44.4%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장애인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또한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전수조사에서는 뇌병변 장애인 53.7%가 평일 낮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출하는 경우에도 재활병원과 의료기관 이용이 16.7%, 지역 내 복지관 이용 9.6% 순이며 일발 직장(4.8%)이나 보호 고용영역(1.6%)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6.4%에 불과함.

2) 뇌병변장애인은 타 장애보다 사회적 차별 경험 인식이 높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취업(46.5%)이며, 이어 보험제도 계약 시,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진학 시 순으로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은 극소수로 서울시 전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1,281명 중 뇌병변장애인은 104명에 불과하고 주요 이용 연령대는 20대임.

3) 뇌병변장애인 가구 약 20%가 기초수급이며, 장애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장애인가구 평균의 2배 이상

: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전체 장애인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편으로 2018년 정국 기준 뇌병변장애인의 약19.4% 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장애인 수급가구 비율 13.4%에 비해 다소 높았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4만 2천원으로 전국 기준 전체 장애인의 평균 비용 16만 5천원에 비해 약 2배로 경제적 부담이 큼. 항목별로는 보호간병비와 의료비 항목에서 상대적 지출이 높음.

4) 뇌병변장애인은 고용률이 낮고, 일하고 있더라고 평균 근로수입은 최저임금 수준

: 뇌병변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적고, 일하더라도 평균 근로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 34.9% 대비 뇌병변장애인 고용률은 12.0%로 매우 저조함.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9.4%만이 근로하고 있으며 월 평균 근로수입은 약 135만원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7.1%,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1.9% 순임.

5) 뇌병변장애인은 특수학교 졸업 이후 교육활동에 극소수 참여

: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12.7%로 파악되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전국 뇌병변장애인의 1.7%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함.

III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요구사항 분석

1.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시 이동 제약,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에 노출

1)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회 상실

: 이동권 및 접근권(베리어프리)은 사회진출 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함.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상 보장구 이용 비율이 높지만, 학교나 회사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조차도 휠체어 이동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물리적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2) 뇌병변장애 특성이 반영된 활동 지원 부족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등 지원인력은 발달장애 및 지체장애 위주의 교육을 이수한 관계로 근육강직 등 뇌병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임. 또한 중복장애 비율이 높음에도 주 장애 관련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거나,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만 지원되는 실정이어서 경증 뇌병변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음.

3) 진로선택 관련 정보 부족

: 진로 결정 시 본인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막연하게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공을 선택, 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 진학 또는 취업을 결심함. 뇌병변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직무 관련 정보가 부족함.

4)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조

: 뇌병변장애인은 외형적 부분과 언어장애로 근로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며 취업 과정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이 다수 있음. 또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효과 미흡이 우려됨.

2.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려면 세부 장애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

1) 개별화·맞춤화된 지원 강화 필요

: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 장애인은 장애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함.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은 어린 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교육, 훈련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장애인 일자리 대부분은 생산성 직업군에 치중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며 직장생활 시 비장애인과 비슷한 결과를 내더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근무평가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진출 준비에 필요한 중간단계 지원체계 필요

: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심리적 장벽이 높은 편임, 또한 사회 진출 시 필요한 대인관계, 업무능력 등을 습득하기 위한 경험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어 가까스로 취업하더라도 직장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이에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취업 시 필요한 기본업무 교육 및 여러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높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유형별 특성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내실화 필요함.

Ⅳ.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 방안

1.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필요

1)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진 출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

-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성격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접근 필요함.
  : 뇌성마비장애인은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강화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반면, 중·장년기 이후 발생하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지원인력의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 확보로 사회진출 관련 상담, 직장 적응, 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 양성 및 관리

2)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무 개발 등으로 사회진출 여건 개선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및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필요, 뇌병변장애 범주 관련 검 및 법률 재정비

2.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

1) 학령기 이후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을 돕는 지원체계로 뇌병변장애인진로체험센터 설치

- (가칭)뇌병변장애인진로체험센터 설치로 성인전환기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기회 제공

2) 중도장애 등 뇌병변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 방안 마련

- 뇌졸중 장애인과 같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 뇌병변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 전문인력 양성
- 뇌병변장애인 대상 사회성 강화 지원체계 마련

3.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장애특성·욕구에 따른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법률 정비

- 뇌병변장애 범주(뇌성마비와 뇌졸중) 관련 검토 및 법률 재정비

2)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발 및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및 지원 대상 확대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및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지원 다양화
- 일자리사업 관련 인센티브 도입과 평가시스템 개선

3)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진출 확대

- 뇌병변장애인 관련 연구 개발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

〈서울연구원 제329호 정책리포트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 군자출판사(2013)「뇌성마비」
- 군자출판사(2016)「알기 쉬운 뇌성마비」
- 시그마프레스(2012)「신경언어장애」
- 시그마프레스(2005)「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 보건복지부「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http://www.welfare.seoul.kr)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 서울시청 누리집(https://news.seoul.go.kr)
- 강서구청 누리집(http://www.gangseo.seoul.kr)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knat.go.kr)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www.seoulats.or.kr)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www.visitkorea.or.kr)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www.hinet.or.kr)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집(http://www.koil.kr)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http://seoul.dfsc.or.kr)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http://koreaboccia.koreanpc.kr/)
- 대한장애인축구협회(http://kofad.koreanpc.kr/)
- 대한장애인골프협회(http://kdpga.koreanpc.kr/)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jjang2.or.kr)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http://www.mapovision.org/default/)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http://www.ghcenter.org/)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dda.or.kr)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avrd.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누리집(http://www.sndcc.org)
- 서울특별시 교육청 누리집(http://sen.go.kr)
-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n.go.kr/sedu/gangseo/index.do)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ommunicating with people with cerebral palsy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연구(https://www.si.re.kr/node/65093)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1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2판 1쇄 발행 2015년 08월 31일
3판 1쇄 발행 2016년 11월 30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5판 1쇄 발행 2019년 08월 30일
6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6일
7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02일
8판 1쇄 발행 2022년 09월 30일
8판 1쇄 발행 2023년 09월 30일

발 행 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발 행 인 박세영
편 집 인 이은영·이수민·김소희
주 소 (075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전 화 02-2662-3491~4
팩 스 02-2662-2700
홈 페 이 지 www.grccp.or.kr
디 자 인 스토리에이티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